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66408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1. 17.

주 문

1.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7

가. 원고와 B, C은 2013. 6. 23. 사망한 원고의 배우자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들로서, 원고는 B, C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3. 9. 23. 수원지방방법원에 B, C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수원지방법원 2013느합206호)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나. 그러던 중 원고와 B, C은 2014. 9. 26. [redacted]시 E 대 567㎡, F 전 415㎡, G 전 241㎡, H 답 59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원고: 3/7, B, C: 각 2/7)에 따라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다. 이후 관련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쳐 2015. 6. 5.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분할하기로 하고, B, C이 원고에게 위 각 토지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원고는 2015. 7.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의 단독소유로 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경정등기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반송되자 2016. 5.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였고,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7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상속재산분할은 상속 후 공유물분할의 형태이지만 상속개시시점에 소급하고 이미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이를 경정하는 효력이 있는바, 원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자 당초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등기를 마쳤다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시가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확인한 후 평가가액이 법정 상속분에 상응하도록 이 사건 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 부동산을 다른 상속인들의 소유로 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단독소유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한 결과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위 각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과세대상 물건별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이상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7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등기 등이 경료된 후에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분할하거나 증여의 의사에 기하여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3. 9. 23. 수원지방법원에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실, 그러던 중 원고와 공동상속인들은 2014. 9. 2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법정 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위 분할심판청구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감정평가를 거쳐 2015. 6. 5.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2015. 7.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의 단독소유로 이 사건 경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초 공동상속인들의 법정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공동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7

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법정 분쟁의 와중에서 분할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합의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소정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 사건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박소연

판사 문중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7

[별지 1]

목록

(금액 단위: 원)

순번	처분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과세번호
1	2016. 4. 11.	6,279,410	453,850	302,570	7,035,830	9,858
2		3,748,840	270,950	180,630[1)]	4,200,420	9,860
3		1,260,460	91,090	60,730	1,412,280	9,861
4		3,077,000	222,390	148,250	3,447,640	9,862

1) 소장 청구취지 기재 480,63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7

[별지 2]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1.1.>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의 공시송달의 경우 납부기한은 제31조를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3-07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끝.